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9.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8월 25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9월 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5년 9월 5일

제115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1999. 7. 23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 용지의 수불)의 전문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용지관리 업무가 폐지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을 일괄 제작·발급하게 됨.

○ 2004. 3. 22 주민등록법 제18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의 일부 개정으로 등·초본 열람 및 교부권자가 "구청장"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확대되어 자치구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여 온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2조 제1호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를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함.

○ 조례 제2조 제5호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중략)....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18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등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을 따른 것으로 이미 개정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었고, 타당한 입법 조치임

4. 審査結果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2

제출년월일 : 2005.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가. 1999. 7. 23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 용지의 수불)의 전문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용지관리 업무가 폐지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을 일괄 제작·발급하게 됨.

나. 2004. 3. 22 주민등록법 제18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의 일부 개정으로 등·초본 열람 및 교부권자가 "구청장"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확대되어 자치구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여 온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2조 제1호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를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함.

나. 조례 제2조 제5호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중략)....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18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제2조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5.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삭제)